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1145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A

변론 종결2022. 11. 22.

판결 선고2023. 1. 10.

주 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22. 2. 21.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2. 2. 25. 접수 제22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22. 2. 25. 접수 제28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다.

<표1. 보증내역>

1	D	85,000,000	2014. 7. 31.	2022. 7. 22.	기업일반 자금대출	G은행 H금융센터
2	E	127,500,000	2016. 12. 8.	2022. 12. 2.	기업구매 자금대출	G은행 금융센터
3	F	80,000,000	2019. 6. 27.	2022. 6. 24.	일반 자금대출	I은행 진영지점

<표2. 대출내역>

1	D	85,000,000	G은행 H금융센터	2014. 8. 6.	100,000,000
2	E	127,500,000	G은행 H금융센터	2016. 12. 8.	150,000,000
3	F	80,000,000	I은행 진영지점	2019. 7. 3.	100,000,000

(2)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 이사로서 소외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보증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소정의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에 대해서도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소외 회사는 2022. 2. 7. 원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G은행과 I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다음 표3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표3. 대위변제내역>

1	D	2022. 5. 26.	78,200,000	1,724,942	79,924,942
2	E	2022. 5. 26.	127,500,000	3,085,991	130,585,991
3	F	2022. 5. 2.	80,000,000	1,112,986	81,112,986
합계	285,700,000	5,923,919	291,623,919		

(2)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3)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1,946,18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 및 위 회수금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다음 표5 기재와 같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회수된 잔액은 현재 1,897,215원이다.

<표5. 대위변제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 내역>

1	D	79,924,942	1,760,320	78,164,622	385
2	E	130,585,991	-	130,585,991	-
3	F	81,112,986	185,860	80,927,126	40
합계	291,623,919	1,946,180	289,677,739	425	

(4)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22차전5383호로 지급명령신청(청구금액 78,780,271원)을 하여 2022. 7. 19.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B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B은 2022. 2.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2. 2.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시가 합계 28,472,002원 상당의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I은행, G은행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 이외에도 J은행에 대하여 46,331,000원, K은행에 대하여 26,809,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14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L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위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의 2주 전인 2022. 2. 7. 원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때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2022. 5. 2.과 같은 달 26.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2.경 B에게 61,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1호증 내지 을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B의 I은행 계좌로 2022. 2. 17. 30,000,000원, 같은 달 18. 31,000,000원을 송금한 점, B은 피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즉시 60,267,500원을 O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한 점, O는 2022. 2. 16. 10,000,000원, 같은 달 17. 25,000,000원과 26,000,000원 등 합계 61,000,000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P은 2022. 3. 8. O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 중 60,000,000원을 다시 피고에게 송금한 점, O 명의의 I은행 계좌는 B 또는 소외 회사가 수시로 돈을 입금하여 사실상 B이나 소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반복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영범

별지